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7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신복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박 석,  
소영철, 옥재은, 유만희,  
윤영희, 이봉준, 최진혁,  
홍국표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차별조사관 등의 역할이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서울시 노동조사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므로, 위원회 및 시행계획 등을 통합 및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기함
-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신설)
- 나.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 다. 서울시 노동조사관의 역할과 유사·중복되는 차별조사관 직제 폐지 (제12조 삭제)

라. 일 생활 균형 실천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 2항)

마. 시장이 지정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에 3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p>
<p>제6조(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u></p>
<p>제12조(차별조사관) ① <u>시장은 양성평등 고용 및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u></p> <p>② <u>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u></p> <p>1. <u>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u></p>	<p><u>&lt;삭 제&gt;</u></p>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고용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

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9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3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19조(지원사업)제2항	○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법인·단체 소속 근로자 대한 재정적 지원비용 발생 ⇒ 총비용 9,550,000천원 발생
2	제19조(지원사업)제3항	×	별도의 세입감소 <sup>1)</sup> 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 노력 기업·법인·단체 소속 근로자 대한 지원비용(안 제19조제2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급여
  -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나. 전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 대직자에게 수당 지원
-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최대 90만원 지급
  -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급여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매년 동일 조건을 전제)
  - (지원비용) 200천원<sup>2)</sup>으로 전제
  - (지원대상) 625명<sup>3)</sup>을 전제
  - (기 간) 4.3개월<sup>4)</sup>을 전제

1)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누락세원을 추징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으로 책정

3)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육아휴직자 발생 시 기본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 동료응원수당을 지급하며, 두 지원금이 같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발생하므로 지원인원(1차 모집결과를 토대로 2025년은 1,250명 추산)을 1:1로 나누어 각 625명으로 산정

4) 최대 6개월 지원 예정이나,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기간 고려 4.3개월 추산

-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매년 동일 조건을 전제)
  - (지급비용) 100천원<sup>5)</sup>으로 전제
  - (지급대상) 625명<sup>6)</sup>을 전제
  - (기 간) 9개월<sup>7)</sup>을 전제
-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매년 동일 조건을 전제)
  - (지원비용) 900천원<sup>8)</sup>으로 전제
  - (지원대상) 900명<sup>9)</sup>을 전제
  - (기 간) 1개월<sup>10)</sup>을 전제
-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
  - ※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련부서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9,550,000천원**(연평균 1,9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비용(안 제19조제2항)	537,500	537,500	537,500	537,500	537,500	2,687,500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지원 비용(안 제19조제2항)	562,500	562,500	562,500	562,500	562,500	2,812,500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비용 (안 제19조제2항)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4,050,000
	소계(a)	1,910,000	1,910,000	1,910,000	1,910,000	1,910,000	9,55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910,000	1,910,000	1,910,000	1,910,000	1,910,000	9,550,000

주 :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5)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으로 책정

6)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대상 참조

7) 최대 1년 지원 예정이나, 신청시기 및 대체인력 채용기간 고려 9개월 추산

8) '23년 10~29인 규모 기업(신청기업 중 31.1%로 가장 많음)의 30~34세 여성('23년 서울 평균 출산연령 34.57세 고려)의 월 평균 정액급여 276.1만원을 기준으로 2024년 서울 임금상승률 3.9%를 2년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

9) '24년 누적 약 500개사 신청 예상, '25년 말까지 1,500개사 추산, 기업당 0.6명 적용 900명 산정

10)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1개월 책정

4. 덧붙이는 의견 : 동 개정안 사업은 2025년 시행예정<sup>11)</sup>으로 현재 기시행사업으로 볼 수 없어 비용 추계 대상으로 판단하였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 노력 기업·법인·단체 소속 근로자 대한 지원비용(안 제19조제2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지급
  -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9,550,000천원(연평균 1,910,000천원)

$$\sum_{i=1}^5 (\text{①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연평균비용} + \text{②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지급 연평균비용} + \text{③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연평균비용})_i$$

$i = \text{비용추계 연차(2025년~2029년)}$

11)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인센티브

연번	지원내용	제공시기(예정)
1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자 공백기간 동안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으로 연계 지원(최대 6개월 생활임금 지원) * '24년 시범 운영, '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24년
2	·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직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25년
3	·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25년
4	·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	'25년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최초 145개 기업 선정... 2차 모집 시작」 (2024. 8. 26.)

$$\begin{aligned} \text{나. 연평균 비용} &= 1,910,000\text{천원}(\text{①} + \text{②} + \text{③}) \\ &= 537,500\text{천원} + 562,500\text{천원} + 810,000\text{천원} \end{aligned}$$

-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 537,500천원
  - = 지원비용(P) × 지원대상(Q) × 기간(T)
  - = 200,000천원 × 625명 × 4.3개월
  
- ②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지급 연평균 비용
  - = 562,500천원
  - = 지급비용(P) × 지급대상(Q) × 기간(T)
  - = 100,000천원 × 625명 × 9개월
  
- ③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연평균 비용
  - = 810,000천원
  - = 지원비용(P) × 지원대상(Q) × 기간(T)
  - = 900,000천원 × 900명 × 1개월